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10,000,000	42,300,000
일반회계	1,278,500,000	38,355,000
특별회계	131,500,000	3,945,000
공기업특별회계	45,700,000	1,371,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9,200,000	876,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500,000	495,000
기타특별회계	85,800,000	2,574,000
수질개선특별회계	7,245,000	217,3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80,000	98,4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335,000	10,050
주택사업특별회계	326,000	9,780
치수사업특별회계	15,250,000	457,500
주차장특별회계	4,577,000	137,310
대지보상특별회계	290,000	8,70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4,000,000	1,620,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1,000	9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3,000	12,3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3,000	1,5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588,181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7,182,316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322,782천원, 내부유보금 5,083,083천원)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